

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9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세운상가 일대는 보행으로 연결되는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허브 조성을 목표로 '15.12월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, 일대 조성된 거점공간에 대해서 지난 '17.9월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현재까지 거점공간 운영, 거점공간 관리 및 거버넌스 운영 등 부문별 용역방식으로 운영·관리 중임
- 다. 금년도 2단계 보행데크 개통 등 공공공간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므로 공공 거점공간의 통합적 관리운영 및 도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위치 : 종로구 종로 1~4가동, 중구 을지로동 일대
- 규모 : 거점공간 70개소, 면적 9,197.28㎡
- 시설용도 : 광장 및 다목적홀, 창업지원, 산업거점, 거버넌스
- 개관일 : '17. 9. 19. / 2단계: '21.12월 준공(예정)

나. 위탁 개요

- 위탁사무 :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
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시설형)

- 위탁시설 : 거점공간 70개소(큐브 58개소 포함) 등
- 위탁기간 : 3년 (2022. 4. 1.~2024.12.31.)
- 소요예산 : 8,401백만원(3년)
 - '22년 2,705백만원, '23년 2,848백만원, '24년 2,848백만원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거점공간 및 공공공간 관리운영
 - 메이커스큐브 입주지원 서비스, 기술문화공간 기획운영, 공유공간 및 공공공간 대관 서비스, 활성화 지역 공간기획 등
- 산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업 지원
 - 기술중개 서비스(도심제조업과 외부자원 연계), 세운메이드(제품화·사업화 지원), 세운맵(산업지도·콘텐츠 기획 운영) 등
- 협력주체,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 및 소통관리
 - 주민조직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, 협력적 전략기관 파트너십 구축 등
- 정책 협력 및 조정
 - 세운 일대 도심부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 및 협력
- 기타 홍보 및 마케팅 지원

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세운상가 일대는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인력과 기술이 집약되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도심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역사도심의 중심지로서,
- 재생사업의 지속적 유지 및 공감대 확산, 도심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5조(책무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·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0조(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)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'22년 민간위탁금 편성(2,705백만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심권사업과 다시세운사업팀 강성한 (☎2133-8498)